
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

2020. 7.

교 육 부
[고등교육정책실]

목 차

1. 사업개요	1
2. 추진방향	1
3. 지원계획	2
○ 지원대상	2
○ 사업계획서	2
○ 사업계획서 점검	3
○ 예산배분	3
4. 사업관리	4
5. 향후계획(안)	5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명)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
- (사업목적)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을 긴급 지원
 - 특별장학금 등 지원을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대학의 실질적 자구 노력이 교육·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시 지원
- (지원기간/규모) 2020년(한시) / 1,000억원(일반대 760억원, 전문대 240억원)

2. 추진방향

- (기본방향) 특별 장학금 지급 등 실질적 자구노력, 코로나19 방역, 온라인 강의 등을 추진한 대학의 재정부담이 교육·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
- (고려사항)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각 대학의 특별 장학금 등 지급실적, 실질적 자구노력,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

< (참고) 국회 부대의견 >

(지원목적*)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 지원을 목적으로 대학·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(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) 예산을 집행한다.

(대학의 자구노력*) 교육부는 동 예산 집행 시 특별 장학금 등 지급실적,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각 대학의 고통분담을 통한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, 각 대학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집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,

(집행분야*) 대학이 온라인 수업, 방역, 교육환경개선 및 실험·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관리한다.

* 괄호 안은 부대의견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, 별도 표기한 내용임

3. 지원계획(안)

□ (지원대상)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자율개선대학, 역량강화대학, 진단제외 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 등*을 지급한 대학

*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생과의 소통·협의 결과에 따라 2학기 등록금 선감면, 특별장학금, 통신지원비, 주거지원비,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를 포함하며,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

※ 다만, 특별장학금 등 지급 대상 및 규모, 방식은 대학별 여건(등록금 및 장학금 수준, 재정·학생여건 등)에 따라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여 결정

○ 단, 사업 예산규모 및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1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(19회계 결산 기준)

□ (사업계획서)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제출

① 대학 등록금 관련 학생과의 소통·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

② 사업비 집행계획(안)* (온라인 강의 질 제고, 코로나19 방역, 교육환경 개선, 실험·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)

* (대학별 집행계획 작성 기준 금액)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이내

(예시)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이 10억원인 경우, 10억원 이내에서 집행계획 작성 단, 최종 확정 사업비는 지원 대학 및 실질적 자구노력 수준에 따라 변동

③ 구성원 의견 수렴 및 환류를 통한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·지원 및 질 관리 계획*

* 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

- (사업계획서 점검) 비대면 교육(온라인 강의) 질 관리를 위한 점검 추진
 - (점검방향) 2학기 온라인 강의 지원 및 질 관리 계획 부분 점검을 통해 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
 - (점검위원) 온라인 강의 전문가 및 해당 분야 보직자 등으로 구성
- (예산배분)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*에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규모·지역 등 가중치 등을 곱한 값을 전체 대학 합계 대비 비율로 배분
 - *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** =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금액 - 기존 교내·외 장학금 전환 금액
 - ** (자구노력 예시) 교비 및 대학회계 지출구조조정, 적립금 인출, 코로나19 기부금, 발전기금 등 (지원대상) 학부생 지원 금액만 인정되며,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
 - ※ 단,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지원 가능
 - ※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이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부정·비리 수혜 제한 적용 제외

< 대학별 사업비 배분 산식(안) >

$$\text{해당대학 사업비} = \frac{\text{해당 대학 (실질적 자구노력 금액} \times \text{규모·지역 가중치} \times \text{적립금 가중치)}}{\sum \text{모든 대학 (실질적 자구노력 금액} \times \text{규모·지역 가중치} \times \text{적립금 가중치)}} \times \begin{matrix} \text{일반대 760억} \\ \text{전문대 240억} \end{matrix}$$

< 규모·지역 가중치(안) >

구분 (학생수)	수도권	비수도권
대규모 (일반대 : 1만명 이상 전문대 : 4천명 이상)	1.0	1.2
중규모 (일반대: 5천명~1만명 미만 전문대 : 2천명~4천명 미만)	1.0	1.2
소규모 (일반대 : 5천명 미만 전문대 : 2천명 미만)	1.2	1.2

< 적립금 가중치(안) >

1천억 이상	9백억 이상 ~1천억 미만	8백억 이상 ~9백억 미만	7백억 이상 ~8백억 미만
사업 지원 대상 제외	0.5	0.6	0.7
6백억 이상 ~7백억 미만	5백억 이상 ~6백억 미만	5백억 미만	
0.8	0.9	1.0	

4. 사업관리

- (사업 추진 체계)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, 사업관리위원회, 대학이 추진
 - 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·공고 등 사업 총괄
 - (사업위탁기관)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·운영 수행
 - 세부 시행계획 수립, 사업비 교부 등 집행·관리
 - (사업관리위원회) 대학혁신지원사업 1,2유형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본 사업 사업관리위원회 기능을 수행
 - ※ 전문대학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역할 수행
 - (대학)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출, 사업 추진 및 실적 보고
- (사업비 집행) 사업비는 학생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온라인 강의 구축·운영 지원 및 질 관리, 코로나19 대응 방역, 교육환경개선, 실험·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
 - 조속한 집행을 통한 학생 체감도 제고 및 경제 활성화 기여
- (사업비 관리) 사업비는 기관(총장)에 총액으로 교부하며, 교비(대학) 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
 -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준용
 - ※ 단, 본 사업비는 장학금 등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불가
 - ※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 회계 선택에 따른 간접비 편성 불가
 - ※ 대학의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지, 지원금 환수 등 가능
 - 사업비는 '21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
 - 사업종료 시 대학은 결과보고서(사업비 집행내역 포함) 제출

5. 향후계획(안)

-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: 7월
- 대학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: 8월 ~ 9월 중
- 사업계획서 점검 : 10월
- 가배정액 안내 및 사업비 집행계획서 제출 : 10월
- 대학별 사업비 교부 및 집행 : 10월~